

재택근무 관련 복무·보수 제도

Q1. 급식비, 통근비는 평소와 동일하게 지급되나요?

A. 현재 재택근무 중에도 급식·통근보조비를 차감 없이 복무 일정에 맞춰서 정상 지급하고 있습니다.

Q2. 초과근무수당이나 현장가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 초과근무수당은 차감 없이 정상 지급
현장가산금은 지급대상자 중 13일 이상 현장근무 시 지급(복무유형 '현장근무' 입력 必)
※ 지급대상자: 전주상 또는 지하에서 케이블 포설 및 선로 유지보수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Q3. 재택근무로 입력된 경우 휴가 사용이 안되는데, 재택근무 중 휴가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입력 방법이 있나요?

A. ① 연차(청원) 휴가 : 재택근무 신청 취소 후 휴가 신청
② 반차 휴가 : 재택근무 중 신청 가능

Q4. 재택근무 시 단축근로가 적용되지 않나요?

A. 운영 기준상 재택근무와 단축근로 동시 사용이 불가능하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임신·육아 단축근로에 대해서는 동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Q5. 재택근무 중 시내 출장을 다녀와야 될 경우에는 복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택근무시의 근무장소는 자택이므로, 재택근무중에는 출장이 불가합니다.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취소하고, 출장 신청 후 출장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